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6. 12. 30.>
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[ ] 고용 [ ]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
소속공인중개사 [ ] 인장등록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(체류지)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

개업공인중개사 종별	[ ] 법인 [ ] 공인중개사 [ ]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

중개사무소	명칭	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

	구분	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소 및 전화번호	자격증 발급 시·도 (공인중개사)	자격증 번호 (공인중개사)
고용인 인적사항							

「공인중개사법」 제15조·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·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	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 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	(소속공인중개사 등록인장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완료
신청인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